

공고

공고제 48호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시계획-889 (전화번호)	전결규정	조령
처리기관	제2부시장	시	정결사항
시행일자	73.7.20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계장	결재 973.7.21 시장실	법무과장 (공문서과) 시민과장 가르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문서관리계장
기안책임자	이재완 73.7.18	조	문서관리계장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	통계 검열 973.7.25
제목	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용		
	제1안 내부결재		
	1 서울특별시 도시 제 93호 (72.5.31)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바있는		
	초천주택단지 (시개 도봉구 미아동 5개)		
	에 대하여		
	2 별첨 관할구청 공사 감독원의 준용허가		
	복면서와 같다. 사업이 완료되었기. 도시		

0201-1-8A

190mm×268mm 백상지 409/m²

1969. 11. 10. 승인

3262

계획법 제 4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공사완료를 용모하고 준용감사공을 교부로서 하의 재정을 바랍시다.

3 본 지역은 정부의 식수복화사업에 부응 적개지 공사 하였고 일부 적개지 단장이 미비되어 당시에 적개지 단장 공사비 (익금 1,719,000 원) 를 예치하였 으며

4. 본 사업 지구 시설은 서울시 도시 제 102호 (73.6.26) 로 시설 (가공망) 일부 변경 된 바 있으며 준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 준용내용

총면적	택지	도로	공원	선형기 처리장	주차장	(별첨) 기타	비고
33,658 평	23,448	8,902	1,047	172	57	32	
100 %	69.66 %	26.45	3.11	0.51	0.17	0.1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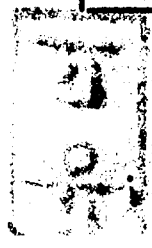
제 2안 공 고
서울특별시 공고



공고안심사	1973. 7. 11	제 14	호
심자자	법정국장	법무	장

원안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용

1. 서울 도시 계획 사업의 클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의 준용을 도시계획법 제 55조 제 1항 및 제 46조 제 2항의 규정과 건설부 도시 제 123호 (73. 4. 4) 가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모합니다.



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며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되다.

1973. 7.

서울특별시

1. 사업집행지 : 시계 도봉구 미아동 상라1, 2 (1필)
2. 사업명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3. 준공면적 : 33,618 평
4. 사업시행자 : 한신부동산 주식회사 대표 김의상
5. 사업기간 착공 : 72. 6. 1

준공예정일 : 73. 4. 15

6. 준공비율일 : 73. 7.
7. 준공도면 : 별첨 도면 (생략)

제 3 안 준 공 검 사 증 (안)

1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상라1, 2
2. 사업의 종류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3. 인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93호 (72.5.2)
4. 준공면적 : 33,618 평
5. 사업시행자 : 한신부동산 주식회사 대표 김의상
6. 준공비율일 : 1973. 7.
7. 준공내역 : 별첨 도면 (인공도)

상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
주택지 조성사업이 별첨 인증도의 준용
도면과 같이 공사완료를 하였으므로 보증금
교부함

1973. 7

시흥특별시장

제 4안
수신 : ^{시흥 공로구 공학동 14} 한신 부동산 주식회사 발신: 시장
 대포 김 의상
제목 : 등기

1. 귀하가 성북구청 경유 당시에
요청하신 시흥 도봉구 미아동 산 1-2
주택지 조성사업 준용에 조치가 대하여는 이를
준용케 하겠으며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준용 용이문 사본 및 준용감사필증 1부

제 5안

수신 : 도봉구청장 발신: 시장
참조 : 시민봉사실장 토목과장 산업과장
 건축과장 세무과장

제목 : 등기

1. 시흥 도시계획법으로 시흥시 2차
제 93호 (72.아.키)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
실시계획 인가된 다음지목에 대하여 별첨 준공
용고문 사본 및 준공감사증 사본과 같이 동시에
완료되었기 통보하시 대지공명 발급 사무 및 토분
화 지목변화 건축허가 사무와 도로 공원 하수도
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

가 사업지: 시내 도봉구 미아동 산 2-1, 2

청부: 준공 용고문 사본 및 준공감사증 사본과
도면 1부

제 6안

수신: 건설부 장관

발신: 시장

제 목: 등전

1. 도시 내(92. 5. 31) 와 도시 내
- 131 호 (93. 6. 26) 에 관한 일과외.

2. 상거대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
실시계획 인가된 시내 도봉구 미아동 산 2-1, 2
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조치 하겠기
노고 함이다

청부: 준공 용고문 사본 및 ^{준공증}도면 1부

제 7안

수신: 총무처 장관 (서울시: 무보실장, 발신: 외장) 발신처장

제 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가. 관(시)보 게재 구분: 음보

나. 관(시)보 게재건명: 일단의주택지구성사업공공

와 법규근거: 도시계획법 제 46조 제 3항

청부: 공공용 사본 2부

제 8안

발신: 과장

수신: 주거과장, 하수과장, 시설관리과장, 도목과장

시민과장

제 목: 등기

1. 당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시제 도봉구 미아동 산 2-1, 2 에 대하여 별첨 준공용 공공용 사본 및 준공 검사공 사본과 같이 공사준공확정기 통보하여 본 지역의 공공시설, 주거관리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청부: 준공용 공공용 사본 와 준공 검사공 사본 및 도면 1부

제 9안

수신: 과재과장

발신: 과장

제 목: 등기

1. 다음 표시 재산은 서울특별시 도시 제 93호 (92. 5. 31) 로 도시계획법 제 46조 제 3항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인가한 지역으로 금번 본 사업이 완료되어, 별첨: 준공: 공공용: 사본 및: 준공검사공

같이 본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

2. 도시계획법 제 8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
서울시 소유로 귀속케 되었기 귀속재산을 통지
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 66조 제 2항의 규정에
의거 본 공공시설 (도로 아동공원, 주차장
및 쓰레기처리장) 을 서울시 소유재산으로
귀와책임하에 귀속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귀속 재산의 내역

재산소재지	지번	구분	면적 (㎡)	비고
서울시 동대문구 미아동	258-56	공원	378	아동공원
"	258-148	"	341	"
"	258-236	"	328	"
"	258-78	장공지	48	쓰레기처리장
"	258-286	"	59	"
"	258-256	"	65	"
"	258-110	"	57	주차장
"	258-249	도로	194	도로
"	258-297	"	243	"
"	258-289	"	8465	"
"	258-287	장공지	16	철강부지
"	258-288	"	16	"

합계 10,210 ㎡

- 첨부 : 1. 인가서 사본 2부
 2. 공모문 사본 2부
 3. 준공감사증 2부 및 준공인양도면 1부

제 10안

수신 : 도봉구청장

장소 : 세무 1과장

제목 : 동건

1. 서울 도시 계획사업으로 서울시 외 제93호 (92.5.31)로 일단의 주택시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다음지역에 대하여 별첨 준공 공모문 사본 및 준공감사증 사본과 같이 용사가 완료되었기 통보하니 대지공명 발급사무 및 토지분할, 지목변환 건축허가사무와 도로 용인 하수도 등 공용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며

2. 아래 표시된 공용 시설 (도로, 공원, 주차장 및 쓰레기처리장) 은 도시계획법 제83 조에 의거 당사로 귀속 조치하는데 토지 대상은 이 필요하니 소유 등록 등재되는대로 토지내장 등본을 제출 등록 할 것

가. 사업지 : 서울 도봉구 내야동 산25-1, 2

나. 제출서류 : 토지내장 등본 각 2매

다. 개소 해산 내역

재산 소재지	거번	지목	지적 (평)	비고
사계도동구 의아동	258-56	공원	378	아동공원
"	258-148	"	341	"
"	258-226	"	328	"
"	258-78	잡종지	48	쓰레기처리장
"	258-266	"	59	"
"	258-26	"	65	"
"	258-110	"	57	주카상
"	258-247	도로	194	도로
"	258-297	"	243	"
"	258-289	"	8465	"
"	258-287	잡종지	16	천양부지
"	258-288	"	16	"

합계 10,210 평

첨부: 준공공모문 사본 및 준공감사증서본의 도면 1부

연 수 중

연도 임부집산일반 국민연금 1,719,000

(보통구 가입종 전25회, 2회 농전단지 절까지 단장 공사비
의치금)

상 기 금 액 은 전 회 영 수 함,

1972. 7. 19.

서울특별시청
시정서
한양대학교
방영소
방영소

3271